

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10. 30.(화) 16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 - 제57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, 제5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 - 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 - 국회에서 2012년 제53차·제55차·제57차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함
 - 이 중 비공개로 진행된 '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(2012년 제55차)'은
 -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처리하고, 나머지 안건은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⑥ 의결사항

가.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-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 - (2012-59-239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(주)에 대해 원안대로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

< 시정명령 내용 >

- ◆ 재허가조건에 따른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2012년 11월 15일까지 수립·제출하고,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2012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 -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의 (주)영서방송 경영권 지배 - (2012-59-240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이 신청한 (주)영서방송에 대한 '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인가'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

< 변경승인 및 인가 조건 >

1.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은 (주)영서방송에 부과되어 있는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변경승인 및 인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을 포함한 (주)영서방송의 경영개선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실적 및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 (주)영서방송의 주식 변동 내역 >

변경 전		변경 후	
* (주)횡성유선방송 (김희진)	31.57%	(주)횡성유선방송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)	31.57%
김희진	26.30%	김희진	19.74%
(주)씨씨에스충북방송	4.10%	(주)씨씨에스충북방송	10.66%
(주)에스비인터랙티브	10.10%	(주)에스비인터랙티브	10.10%
(주)월드이벤트티브이	7.80%	(주)월드이벤트티브이	7.80%
기타(4인)	20.12%	기타(4인)	20.12%
합계	100.00%	합계	100.00%

※ (주)에스비인터랙티브 및 (주)월드이벤트티브이는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자회사(특수관계자)

※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은 특수관계자 및 (주)횡성유선방송의 지분(31.57%)을 포함, (주)영서방송에 대해 총 60.13% 의결권을 행사

< (주)횡성유선방송의 주식 변동 내역 >

변경 전		변경 후	
김희진	52.00%	(주)씨씨에스충북방송	52.00%
백현길	34.00%	백현길	34.00%
김희정	14.00%	김희정	14.00%

다.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(DMB)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 - 광주문화방송(주) 등 4개사 - (2012-59-241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광주문화방송(주), 대전문화방송(주), 안동문화방송(주), (주)광주방송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구축 관련 재허가 조건을 원안대로 변경하기로 의결함

< 재허가조건 변경 내용 >

사업자명	재허가조건 변경
광주문화방송(주)	○ '12.12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남산', '영암', '영광', '진도', '장흥', '별교', '고창', '운산', '순창' 등 총 9개 방송보조국을 재허가조건에서 제외한다.
대전문화방송(주)	○ '12.12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괴산' 방송보조국을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한다.
안동문화방송(주)	○ '12.6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문경'과 '12.12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상주', '구미' 및 '13.12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앞산', '봉화' 등 총 5개 방송보조국을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한다.
(주)광주방송	○ '12.6월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노고단' 방송보조국에 대해 그 구축시기를 '13.6월로 연장한다.

7] 보고사항

가.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(안)에 관한 사항

-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'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시장획정(안)을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- 주요내용(방송시장 획정방안)

① 유료방송시장획정(안)

- 아날로그와 디지털 케이블TV, 위성방송과 IPTV를 포괄하는 유료방송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되, 디지털방송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디지털방송시장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
- 다만, 가입자의 지역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의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은 개별 방송구역별로 획정

② 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(안)

- 지상파 방송3사(K2, M, S)별로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을 각각 획정하고,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을 별도로 획정
- 지상파 역외재전송 금지로,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시장은 원칙적으로 지역시장으로 획정하고, 유료방송채널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가 거래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아 전국시장으로 획정

③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확정(안)

- 지상파방송용과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외주프로그램 거래 시장으로 확정 (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과 기타 방송프로그램 거래는 시장확정 대상에서 제외)
-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리적 위치가 거래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아 지리적 시장의 범위는 전국으로 확정

④ 방송광고시장확정(안)

- 방송광고시장은 프리미엄 방송광고와 일반 방송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, 전체 방송광고시장과 지상파 방송3사 중심의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으로 확정
- 방송광고시장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리적 위치가 거래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아 지리적 시장의 범위는 전국으로 확정

○ 향후 일정

- '12. 12월,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실시 결과 방통위 보고

㉔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별도 통지키로 함

6. 폐 회 (17:10)